

확 인 서

본인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6조제2항·제5항(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「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인 ○○○(가명)에 대한 조사·검증 등의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피해자등과의 관계: ()

○ ○ ○ (서명 또는 인)